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724
----------	-----

2022. 4. 25.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4. 13. / 남양주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. 4. 15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4. 25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서 정한 것으로 규정 (안 제3조)
- 수수료 징수 방법은 「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」에 따른다고 명시 (안 제5조)
- 조 제목 변경 및 수수료 면제자의 조건과 법령 근거 명시 (안 제7조)
- 수수료 요율 정비 (안 별표 1)
 - 1.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조정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상 입찰수수료와 중복되는 공유재산

대부신청 관련 수수료 삭제

2.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수수료 신설·변경

-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낙시터업 관련 수수료 신설

-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준용하여 안마 시술소 개설 수수료 상향

3.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, 해당 사무가 없는 경우 등 불필요한 수수료 삭제

- 「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 및 개별법령 등에 따른 정비

○ 법령 정비 규정에 따른 용어 정리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○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수수료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「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과 「의료법」 및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」 등의 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규정을 근거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○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붙임 :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